

『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·리장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5개통·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 개정
 - 통·리장 5명 증원 : 620개 통리장(통장 448, 리장 172)
⇒ 625개 통리장(통장 453, 리장 172)
 - 송정동 1명, 임오동 4명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 - 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620명에서 송정동 1명, 임오동 4명 등 총 5명이 증가된 625명으로 조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」에 맞게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지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□□행정면□□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-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□□행정 동·리□□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81조(이장의 임명)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 <개정 2010.11.2>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이 임명한다.

③ 읍장·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